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2년 5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『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』이 폐지(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, 2011.12.16)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구체화(건의 및 자문 역할)

-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-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-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(안 제12조 호 신설)

나. 수당 등 지급

-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

(안 제15조 변경)

다.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 명시

-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등

(안 제16조 제1항 변경, 제3항 삭제)

라. 보건진료소 업무 수탁 폐지(안 제17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21조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　　타

(1) 입법예고(2012. 3. 27 ~ 2012. 4. 15)결과 : 의견 있음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여 부	비고
대구/경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(포항시남구 장기면 모포리)	○ 보건진료소 사업의 현실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으로 반대	반영(　) 미반영(√) ○ 보건진료소 운영 체제를 개편하여(업무수탁 폐지) 보건의료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이 개정 취지이며, 지방자치법 제 22조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자치입법으로 제출 의견은 미반영	

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4호 중 “총회 및 운영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자산 회계 및”을 “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임원 및 직원”을 “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및 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법 제19조제2항”을 “법 제21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2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3.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·개축
2.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
3.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13조제1항 중 “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”를 “15인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.

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운영위원회의 소집,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12인이내”를 “15인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총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총괄하고 총회와”를 “총괄하고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수당등)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협의회는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매월”을 “매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진료비) ① (생 략)	제9조(진료비) ① (현행과 같음)
②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기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써 진료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1조(정관)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.	제11조(정관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	4. 운영위원회----------
5.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	5.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-----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	7. 임원----------
8.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	8. ---------- 운영 및 후원---
제12조(기능)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.	제12조(기능) ①-------- 법 제21조제2항----------.
<신 설>	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<신 설>	2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3.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<신 설>	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1.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·개축 2.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.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제13조(기구) ①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	제13조(기구) ①---------- 15인 이하----------.
②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총회에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.	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
③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소집,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	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신 설>	④운영위원회의 소집,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임원)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	제14조(임원) ①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운영위원 12인 이내	3. --------- 15인 이내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.	②----------운영위원회--------.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	③---------- 총괄하고 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사무장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. 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	제15조(수당등)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6조(재정) ①협의회는 진료수입, 회원의 회비, 보조금, 찬조금,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6조(재정) ①협의회는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
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②---------- 매년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③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17조(업무수탁)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	<삭 제>